

<b>제2021-94호</b> <b>2021년 5월 18일(화)</b>	<b>시</b>  <b>보</b> <b>여수시</b>	<b>시 정 지 표</b>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21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화양면) 3
- 여수시 고시 제2021-21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451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5
- 여수시 공고 제2021-1458호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편입토지 측량 등을 위한 출입 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1-1460호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재설 및 재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21-1461호 도로지정공고(돌산읍 평사리 28번지) 19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592호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
- 여수시 조례 제1593호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4
- 여수시 조례 제1594호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7
- 여수시 조례 제1595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여수시 조례 제1596호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여수시 조례 제1597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여수시 조례 제1598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여수시 조례 제1599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53
- 여수시 조례 제1600호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71
- 여수시 조례 제1601호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74
- 여수시 조례 제1602호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 여수시 조례 제1603호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86
- 여수시 조례 제1604호 여수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0
- 여수시 조례 제1605호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97

<b>회 람</b>								
----------------	--	--	--	--	--	--	--	--



##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밭작물 재배
2. 사업의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농경지로 조성
3. 사업의 구역
  - 위 치: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산3-2
  - 대지면적: 1,785㎡
  - 개간면적: 847㎡
4. 사업비: 20,900,000원
5. 사업예정기간: 당초 - 2020. 4. 6. ~ 2020.12.31.  
                  변경 - 2020. 4. 6. ~ 2021.12.31.
6. 사업의 효과: 밭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
7. 사업시행자: 여수시 화양면 석교로 119-15  
                  권치\*

2021. 5. 18.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1 - 21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0-90 (20. 12. 22.)	2021. 5. 18.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21. 5.	2022. 12.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 608-7번지 지선	화산항 어촌뉴딜 300 여객선기항지 개선사업

2021. 5. 18.

여 수 시 장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829	패류 양식	수하식	13.00	돌산 금봉	2021.6.02. 2031.6.01.	1,300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	김**외 7	10814 재개발
11830	패류 양식	수하식	10.00	돌산 금봉	2021.6.05. 2031.6.04.	1,000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	황**외 3	10827 재개발
11831	패류 양식	수하식	15.00	화양 안포	2021.6.08. 2031.6.07.	1,500	여수시 예울마루로 30, ***동 ***호 (웅천지월)	임**외 3	10828 재개발
11832	패류 양식	수하식	15.00	화양 안포	2021.6.05. 2031.6.04.	1,500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	문**외 9	10829 재개발
11833	패류 양식	수하식	15.00	돌산 금봉	2021.6.08. 2031.6.07.	1,500	여수시 돌산읍 금천길 **- *	한**외 8	10830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1. 5. 18.

# 여 수 시 장

##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편입토지 측량 등을 위한 출입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 예정인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8.

여 수 시 장

### 1. 공고 개요

- 가. 사업시행자 : 여수시
- 나. 사업종류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 다. 사업명 :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 라. 출입자 : 사업 업무담당자, 설계사, 측량기사 등
- 마. 출입기간 : 2021. 5. 24. ~ 2021. 8. 31. (일출 후 ~ 일몰 전)
- 바. 공고기간 : 2021. 5. 18. ~ 2021. 6. 1.
- 사. 출입목적 : 토지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등을 위한 현지 조사
- 아. 출입토지의 구간 : 여수시 오천동, 만흥동 일원
- 자. 출입대상 토지 및 소유자 : 붙임 토지조서 참고

### 2. 기타사항

- 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 등을 여수시 산업지원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시 산업지원과(☎061-659-3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붙임: 토지조서 1부

## 오천산단 재생사업 대상지 토지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공부상	편입			
합계				-	15,368			
1	여수시 오천동	산185-2	임	212	51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진입도로 1
2	여수시 오천동	176	장	3,297	6	여수수산업*조합법인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오천동)	
3	여수시 만흥동	11-3	도	5,580	5,357.2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4	여수시 오천동	180-2	장	1,983	6	오*산업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4*(만흥동)	
5	여수시 오천동	236-1	답	166	2	라*권	23*-1	
6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임	2,834	404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7	여수시 오천동	920	도	1,180	260.5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여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8	여수시 오천동	240-5	답	2	2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9	여수시 오천동	176-9	도	2	1	여수수산업*조합법인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오천동)	
10	여수시 만흥동	11-4	도	252	233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11	여수시 만흥동	산35-18	임	863	17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12	여수시 오천동	170-7	답	4	0.5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13	여수시 만흥동	11-2	구	372	337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14	여수시 오천동	236-8	답	28	28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15	여수시 오천동	238-4	답	721	5	전*홍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6길 17, 이**동 3***호(홍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16	여수시 오천동	178-11	도	8	1	이*희 외 1인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1, *동 3**호(둔덕동, 남해화학사택)	
17	여수시 만흥동	7	장	5,805	352	해*식품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5*(만흥동)	
18	여수시 오천동	240-1	대	448	17	이*민	36*-4	
19	여수시 오천동	239-6	답	13	6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20	여수시 오천동	237-8	답	39	32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21	여수시 오천동	212-3	도	10	4	윤*두	14*-1	
22	여수시 오천동	913-14	구	82	5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여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23	여수시 오천동	239-1	대	2,018	45	김*환	23*-1	
24	여수시 오천동	177-3	장	827	1	주식회사마*든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9*-3(오천동)	
25	여수시 오천동	178-3	장	1,388	6	이*희 외 1인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1, *동 3**호(둔덕동, 남해화학사택)	
26	여수시 오천동	181	도	7,164	7,14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여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27	여수시 오천동	212-5	도	76	30	윤*두	14*-1	
28	여수시 오천동	212-2	도	24	4	윤*두	14*-1	
29	여수시 만흥동	12	도	5,323	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여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30	여수시 오천동	240-9	도	37	37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31	여수시 오천동	212-8	도	39	33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32	여수시 오천동	206-9	전	323	160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33	여수시 오천동	산178-3	임	3,157	7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34	여수시 오천동	249-4	도	1	0.5	이*조	37*-3	

35	여수시 오천동	249-5	도	5	4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36	여수시 오천동	235-7	도	2	2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37	여수시 오천동	240-4	도	40	20	이*민	36*	
38	여수시 오천동	산180-3	도	144	17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1 정부세종청사 4동	
39	여수시 오천동	174-1	장	4909.6	4	주식회사신*제약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11(오천동)	
40	여수시 오천동	240-3	도	6	3	이*민	36*	
41	여수시 오천동	211-1	답	70	9	윤*채 외 1인	25*	
42	여수시 오천동	240-2	도	25	4	이*민	36*	
43	여수시 오천동	920-2	도	2	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44	여수시 오천동	211-7	답	143	122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45	여수시 오천동	179	장	3,164	6	주식회사창*피엔비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8*-6 (오천동)	
46	여수시 만흥동	7-1	장	1,043	123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47	여수시 만흥동	7-2	장	775	41.3	나*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능로 9*	
48	여수시 오천동	205-6	도	118	21	윤*렬	31*	
49	여수시 오천동	179-1	장	1,653	1	주식회사창*피엔비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8*-6 (오천동)	
50	여수시 오천동	236-9	답	103	102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51	여수시 오천동	178-10	장	256	3	이*희 외 1인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1, *동 3**호(문덕동,남해화학사택)	
52	여수시 오천동	237-1	답	354	13	전*홍 외 1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6길 17, 이**동 3***호(홍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53	여수시 오천동	239-5	답	31	31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54	여수시 오천동	210-4	대	97	46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55	여수시 오천동	238-3	답	7	4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56	여수시 오천동	206-8	도	84	12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57	여수시 오천동	237-7	답	29	29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58	여수시 오천동	238-1	답	5	4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59	여수시 오천동	185	도	11,504	8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60	여수시 오천동	187	구	2,823	12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61	여수시 오천동	178	장	3,306	7	주식회사일*수산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9*-4(오천동)	
62	여수시 오천동	산182-5	임	47	14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63	여수시 오천동	206-6	대	30	12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64	여수시 오천동	206-3	전	208	63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65	여수시 오천동	235-8	답	1	1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66	여수시 오천동	913-6	구	696	27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진입도로 1
<b>합 계</b>				-	<b>2,833</b>			
1	여수시 만흥동	8-8	도	11	11	주식회사액*포푸드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5*(오천동)	내부도로 2
2	여수시 만흥동	562	전	180	20	한*호 외 2인	군자동 46*	
3	여수시 만흥동	577	답	1,466	1	신*숙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7-*	
4	여수시 만흥동	1457-4	구	11	1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5	여수시 만흥동	1457-3	구	4	2	국(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6동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6	여수시 만흥동	562-3	전	4	4	한*호 외 2인	군자동 46*	
7	여수시 만흥동	6-3	임	1,621	334	서*만	오천동 7*	
8	여수시 만흥동	6-2	임	617	38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9	여수시 만흥동	12	도	5,323	1,20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10	여수시 만흥동	1457-1	구	375	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11	여수시 만흥동	9-7	장	2,789	67	김*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11 1**동 9**호 (신월동 코아루아파트)	
12	여수시 만흥동	1457-2	구	331	1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13	여수시 만흥동	564	답	1,090	207	양*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82번길 6 4**동 1**호(송도동 풍림아이원아파트)	
14	여수시 만흥동	5	전	11,602	536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15	여수시 만흥동	565	답	435	374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16	여수시 만흥동	564-2	답	14	14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b>합 계</b>				-	<b>340</b>			
1	여수시 오천동	174-9	장	161	27	정*식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90 8**동8**호(문수동 원앙파크맨션)	내부도로 3
2	여수시 오천동	174-3	장	1,948	313	정*식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90 8**동8**호(문수동 원앙파크맨션)	
<b>합 계</b>				-	<b>1,610</b>			
1	여수시 만흥동	577	답	1,466	1,370	신*숙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7**	공원1 주차장1
2	여수시 만흥동	576	답	34	34	윤*섭	오천동 25*	
3	여수시 만흥동	567	전	364	55	신*숙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북5길 3*(문수동)	
4	여수시 만흥동	575-1	답	810	32	신*숙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북5길 3*(문수동)	
5	여수시 만흥동	1457-1	구	375	4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6	여수시 만흥동	5	전	11,602	17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7	여수시 만흥동	565	답	435	61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b>합 계</b>				-	<b>381</b>			
1	여수시 오천동	산185	임	10,315	84	김*민	경상남도 진주시 북창대로6번길 13 *동 5**호 (인사동 남성한주아파트)	공원2
2	여수시 오천동	산185-2	임	212	81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3	여수시 오천동	180-2	장	1,983	2.5	오*산업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4*(만흥동)	
4	여수시 오천동	170-7	답	4	3.5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공원2
5	여수시 오천동	168-1	답	587	37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6	여수시 오천동	913-14	구	82	6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7	여수시 오천동	187	구	2,823	110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b>합 계</b>				-	<b>3,103</b>			
1	여수시 오천동	206-4	전	1,519	166	인동*씨남산파후양만흥중중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80-2(서교동)	녹지1
2	여수시 오천동	206-7	전	514	375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3	여수시 오천동	249-2	대	969	6	신*미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9 탄현마을 60*-50*	
4	여수시 오천동	236-1	답	166	96	라*권	23*-1	

5	여수시 오천동	208-1	수	17	1	유*준	만성리
6	여수시 오천동	920	도	1,180	209.5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7	여수시 만흥동	11-1	구	142	12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8	여수시 오천동	238-4	답	721	44	전*홍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6길 17, 이**동 3***호(홍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9	여수시 오천동	240-1	대	448	100	이*민	36*-4
10	여수시 오천동	212-3	도	10	6	윤*두	14*-1
11	여수시 오천동	208-5	대	133	1	서*심	20*-5
12	여수시 오천동	239-1	대	2,018	141	김*환	23*-1
13	여수시 오천동	212-5	도	76	46	윤*두	14*-1
14	여수시 오천동	212-4	도	10	9	윤*두	14*-1
15	여수시 오천동	212-2	도	24	15	윤*두	14*-1
16	여수시 오천동	206-9	전	323	154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17	여수시 오천동	산178-3	임	3,157	165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18	여수시 오천동	249-4	도	1	0.5	이*조	37*-3
19	여수시 오천동	206-1	수	3	3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20	여수시 오천동	249-5	도	5	1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21	여수시 오천동	240-4	도	40	12	이*민	36*
22	여수시 오천동	산180-4	도	180	177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1 정부세종청사 4동
23	여수시 오천동	산180-3	도	144	127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1 정부세종청사 4동
24	여수시 오천동	240-3	도	6	3	이*민	36*
25	여수시 오천동	211-3	도	17	8	윤*수	21*-1
26	여수시 오천동	211-1	답	70	54	윤*채 외 1인	25*
27	여수시 오천동	211-5	도	83	46	윤*수	21*-1
28	여수시 오천동	240-2	도	25	12	이*민	36*
29	여수시 오천동	211-7	답	143	11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30	여수시 만흥동	7-1	장	1,043	65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31	여수시 오천동	249-3	도	90	27	이*수	37*
32	여수시 오천동	249-1	도	52	5	이*조	37*-3
33	여수시 오천동	205-5	대	612	464	윤*렬	31*
34	여수시 오천동	205-6	도	118	97	윤*렬	31*
35	여수시 오천동	236-9	답	103	1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36	여수시 오천동	237-1	답	354	104	전*홍 외 1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6길 17, 이**동 3***호(홍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37	여수시 오천동	206-5	도	39	24	김*오	36*
38	여수시 오천동	208-2	도	96	1	박*석	광주 서구 양림동 10*-16*
39	여수시 오천동	210-4	대	97	51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40	여수시 오천동	210-1	도	147	32	최*수	동광양시 광영동 755-2 현대아파트 1**동 7**호
41	여수시 오천동	206-8	도	84	25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42	여수시 오천동	207-2	도	30	1	윤*안	화순군 능주면 관평리 31*
43	여수시 오천동	산182-5	임	47	10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44	여수시 오천동	206-2	대	32	31	장*수	만흥동 29*
45	여수시 오천동	206-6	대	30	18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녹지1

46	여수시 오천동	206-3	전	208	145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47	여수시 오천동	913-6	구	696	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b>합 계</b>				-	<b>2,179</b>			
1	여수시 만흥동	567	전	364	307	신*숙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북5길 3*(문수동)	녹지2
2	여수시 만흥동	6-3	임	1,621	437	서*만	오천동 7*	
3	여수시 만흥동	6-2	임	617	483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4	여수시 만흥동	12	도	5,323	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5	여수시 만흥동	5	전	11,602	951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b>합 계</b>				-	<b>4,651</b>			
1	여수시 오천동	산185	임	10,315	453	김*민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6번길 13 *동 5**호 (인사동 남성한주아파트)	녹지3
2	여수시 오천동	산185-2	임	212	80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3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임	2,834	2,410	여수오*산업단지식품가공 사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만흥동)	
4	여수시 만흥동	산35-18	임	863	336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5	여수시 만흥동	산35-16	임	468	97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6	여수시 만흥동	산35	임	9,259	1,135	여수지구합*도망향의동산 보존회 외 8인	교동 67*-2	
7	여수시 만흥동	산35-7	임	1,794	45	전*기	교동 48*	
8	여수시 만흥동	산35-3	임	4,842	95	김*주	29*	
<b>합 계</b>				-	<b>583</b>			
1	여수시 오천동	181	도	7,164	1.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 정부세종청사 6동	주차장2
2	여수시 오천동	177-8	장	582	581.7	조*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9*(오천동)	
<b>합 계</b>				-	<b>734</b>			
1	여수시 만흥동	7-2	장	775	734	나*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능로 9*	주차장3

#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가 되어 여수시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여 재해방지강화 및 주민 혼란 해소를 위하여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여 수 시 장

##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조례 일부 개정

#### 가. 개정이유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개정

나. 주요개정내용

현행	개정
1. 건축물에 접한 보도전체 2. 건축물 대지에 접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중앙선 및 중앙부분	1. 건축물에 접한 보도전체 2. 건축물 대지에 접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중앙선 및 중앙부분 3. 건축물의 지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여수시 조례 개정

2. 전부개정 및 폐지안: 별첨

3. 입법 예고기간: 2021. 5. 18. ~ 2021. 6. 6.(20일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로시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1) 일반우편: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도로시설관리과장)
- 2) 전자우편: yjyj8912@korea.kr
- 3) 팩스번호: 061-659-5862

라.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

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표의 예시도 같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쳤을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은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쳤을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은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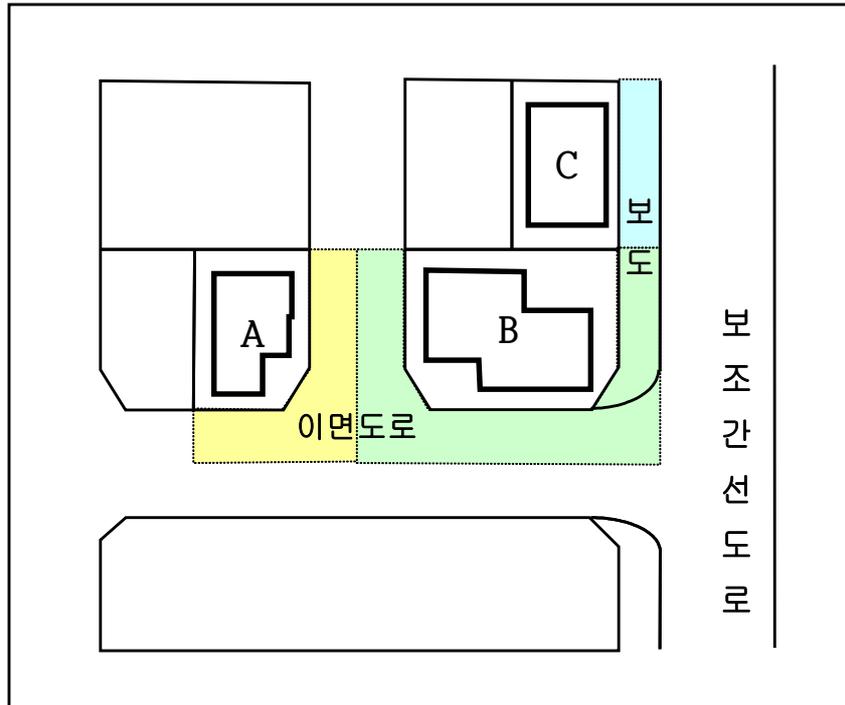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28번지 외 5필지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돌산읍 평사리 28번지	10	6	61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18.

여 수 시 장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592호

붙임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
2.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

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의장은 고문의 위촉에 앞서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사무의 처리)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여수시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당 등)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위촉된 고문은 종전 조례내용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오



여수시 조례 제1593호

붙임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94호

붙임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여수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수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여수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여수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선상폭력 예방 및 해양종사자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해양오염 방지 및 항포구 쓰레기 정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오



여수시 조례 제1595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4회”를 “6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18조제6항제3호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오봉



여수시 조례 제1596호

붙임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17조에 따라”로, “사무중”을 “사무중”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2항 관련)

분야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 법률	수임기관	
			읍면장	동장
세무	1. 납세고지서·독촉장 등의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6조, 여수시세기본조례 제3조	○	
	2. 도세와 시세의 징수	"	○	
	3. 세목별 과세증명 등 지방세 관련 제증명	"	○	○
	4. 지방세 관련 고지서 발급	"	○	
	5.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	○	
관재	6. 시유일반재산 대부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	
	7.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조치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	
	8.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의 결정	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	○	○
민원	9. 주민등록 업무	주민등록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
복지	10. 매장·개장신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	○
	11.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및 취로사업장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	○
	13.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	○
	14.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
환경	14. 공중화장실 관리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	
	15.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시설)의 유지관리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3조	○	
농지	(삭제 2011. 12. 31)	(삭제 2011. 12. 31)		
해양 수산	17. 신고어업처분	수산업법 제47조	○	
	18. 증식시설 사후관리	농림수산업 실시규정 제43조	○	
	19. 양식어장 종묘살포 신고	어장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20. 수산증양식 재해복구 추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21. 수산시설 관리상황 조사 및 보고	농림수산업 실시규정 제43조	○	

분야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 법률	수입기관	
			읍면장	동장
해양 수산	2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 중 다음의 권한 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허가 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허가 다. 위(가~나) 허가사항에 따른 처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 ○ ○	
	23.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읍·면장 허가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24. 공유수면내 금지행위 단속 및 제거 명령 (읍·면장 허가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21조	○	
	25.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 (읍·면장 허가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	
	26.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처분 (읍·면장 허가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58조	○	
	27. 공유수면 점용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시등(읍·면장 허가 사항에 한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도로	28. 시도 점·사용허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허가제외) 및 위반자 처분	도로법 제13조, 제38조, 제83조	○
29. 농어촌도로 점·사용허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허가제외) 및 위반자 처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25조	○	
30. 준용도로 점·사용허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허가제외) 및 위반자 처분		도로법 제7조, 제38조, 제83조	○	
31. 시·군도, 농어촌도로, 준용도로 공작물 설치허가		도로법 제3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	
32.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여수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	
33. 도로점·사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여수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제7조	○	
차량		33. 이륜자동차의 관리 업무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제87조	○
	35. 자동차 해체사실 증명서(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	

분야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 법률	수입기관	
			읍면장	동장
보건	36.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 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 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9조제1항제6호	○	
	3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 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	○	
	38. 쥐·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 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	○	
	3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 는 일정한우물의 사용을 제한또는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0호	○	
	40.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3호	○	
	41.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51조제1항	○	○
42.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	○	
농업	43.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	○
	44.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추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제도 시행규정 제29조	○	○
	45.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2	○	○
	4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비료관리법 제7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
	47.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농지법 제21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

분야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 법률	수임기관	
			읍면장	동장
	48.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제도 시행규정 제37조	○	○
	4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	
	50.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확인	농지법 제24조	○	
	51. 농지원부 작성과 비치 (농지이용실태조사 포함)	농지법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
	52.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자경증명 발급 포함)	농지법 제50조	○	○
	5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확인서 발급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
	5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확인서 발급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
	55. 농어업 재해발생사실 신고 및 조사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	○	○
	56. 농업통계조사	농업통계조사규칙 제8조	○	○
부동산	57.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신고 필증의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58.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u>사무중</u>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117조에 따라</u> -----            ----- <u>사무 중</u> -----            -----            -----            -----            -----            -----.</p>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97호

붙임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서에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u></p>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2 봉



여수시 조례 제1598호

붙임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사용료”로 본다.

제9조제2항 중 “100분의 70을”을 “전부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경한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허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13조 중 “100분의 70을”을 “전부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사업 : 대부료 면제”로, 제2호 중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100분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를 “사업 : 대부료의 100분의 75 감경”으로, 제3호 중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를 “사업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부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제25호·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부하는 경우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영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제15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2649호로 2014. 5. 21. 시행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을 말한다)”을 “2012년 12월 31일”로, “건물로”를 “건물(법률 제12649호로 2014년 5월 21일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건축물을 말한다)로”로, “바닥면적의”를 “바닥 면적의”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농업인”을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년도에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100분의 70을 감액한다.

제14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 사.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100분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중앙

-----  
-----  
----- 전부를 -----  
-----.

제14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그 감면율-----  
-----.

1. -----  
-----사업 : 대부료 면제

가. ~ 사. (현행과 같음)

2. -----  
-----사업 : 대부료의 100분의 75 감경

가. ~ 바. (현행과 같음)

3. -----  
-----사업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 바. (현행과 같음)

② -----  
-----  
----- 대부료의 -----  
-----.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신설>

제1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제25호·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부하는 경우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영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법 제31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제1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



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투자  
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오봉 

여수시 조례 제1599호

붙임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전략산업"이란 여수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7.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8. "투자보조금"이란 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용지매입보조금, 시설보조금, 투자시설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지원서비스업보조금, 컨설팅 비용, 외국인생활환경개선비 등을 말한다.

## 제2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3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별표 1의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중 ‘지식정보 문화산업’의 업종은 별표 2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 고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 지역 안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처리)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

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여수시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말한다)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6.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은 투자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 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국내투자기업의 지원

제15조(국내기업 지원대상) ① 시장은 여수시 지역 안에서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민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별표 1의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 한다.

제16조(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여수시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여수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이전기업”으로 본다.

제17조(투자시설비 지원) ① 여수시에 공장을 두고 가동 중인 기업이 여수지역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하여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동 중인 기업이 천재지변이나 재난·화재로 인한 피해로 기업 도산 등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건물 신·개축이나 기계시설의 설치 등 피해 복구에 사용한 지원 자금(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남도 또는 정부 용자 정책자금을 말한다)의 일정부분의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의 이자보전과 같은 비율을 말한다)를 여수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제18조(사업지원서비스업보조금 지원)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 투자기업인 경우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은 시설투자비에 한정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2.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간 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3.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명당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간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4. 종사원의 인원에 따라 건물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건물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부지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19조(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지역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투자진흥기금

제2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여수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3. 투자유치를 위한 용지매입비 등
4. 그 밖의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기금의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국장이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과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다.

③ 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며,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해야 한다.

④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월 6일부터 10년으로 한다.

제2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여수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장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 등

제2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 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국내외 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의 투자제안서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8.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5. 그 밖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3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여수시 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 전체회의를 개최하거나 개인별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투자유치 자문관 구성 및 임기) ① 제34조에 따른 자문관은 10명 이내로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또는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 투자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투자보조금은 지원요청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내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여수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

은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6.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여수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제40조(채권확보) 시장은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보증보험증권 확보, 저당권 1순위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유치 실적포상)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제3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관련)**

산 업 명	적 용 산 업 내 용	비 고
제 조 산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 ~ 33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제10차 한국표준 산업분류
관광휴양산업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유원지 사업체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개발지구	
교육훈련시설산업	○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 및 위탁 교육생의 직업훈련 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직원 교육훈련 산업체	
해양레저산업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체	
보건산업(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산업분류번호 86101) ○ 의료관광 및 의료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체	
지식정보 문화산업	○ 지식·정보·문화를 활용하여 제조·생산시설 없이 사무실과 인력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체 1. ICT 관련 업체 2.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 업체 3.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문화형 콘텐츠 업체	
에너지신산업	1.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관련 업체 2. 에너지신산업 연구기관 3.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등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업체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산업체(수소의 생산산업 제외)	

## 지식정보 문화산업의 업종(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산업코드	산 업 내 용	비 고
지식정보 문화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산업코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번호임. 다만,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코드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업종분류코드번호로 연계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따른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익봉 

여수시 조례 제1600호

붙임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사진 산업”(이하 “사진 산업”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 종사자의 문화 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대한 경영환경,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진 산업 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  
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18일

여수시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601호

붙임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놀이·학습·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아이 양육 정보 교류 및 보호자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한다.

②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가족품앗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오봉



여수시 조례 제1602호

붙임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 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 : 별표 1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

4. 재활용가능폐기물 :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분리·보관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제2항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 하고,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연두색, 재사용은 하늘색,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로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재사용·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제99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였거나 판매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 (제8조제1항 관련)**

읍 면 동	법정동리	행정동리명 및 자연부락명	면 적(km <sup>2</sup> )	비 고
계	12	15(1)	10	
돌산읍	군내리	송도	0.8	
울촌면	여동리	송도	1.0	
화양면	이천리	운두도(1)	0.1	
남면	두라리	대두	0.3	
		봉통	0.7	
		나발	0.3	
	횡간리	횡간	0.4	
화정면	월호	월호	1.9	
		자봉	0.3	
	제토리	제도	1.0	
	하화리	하화	0.7	
	상화리	상화	0.7	
	낭토리	사도	0.4	
	조발리	조발	0.7	
	여자리	여자	0.7	

[별표6]

**총량제 봉투 판매가격** (제23조제3항 관련)

종류	5 ℓ	10 ℓ	20 ℓ	30 ℓ	50 ℓ	75 ℓ
판매가격(원)	140	250	500	720	1,200	1,800
배출중량					10kg 이하	15kg 이하

※ 폐기물 배출 밀도 0.2kg/ℓ 이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여수시 <u>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u>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u>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수 없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시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u></p> <p>1. (생 략) 가. 50리터 종량제봉투 : 10킬로 그램 이하 나. 75리터 종량제봉투 : 15킬로 그램 이하 <u>다.100리터 종량제봉투 : 20킬로 그램 이하</u></p> <p>2. (생 략) 3. 대형폐기물 :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u>시장</u>이 <u>지정하는 장소에 배출</u> 4. 재활용가능폐기물 : <u>별표 2의 방법으로 분리·보관한후에 지정 장소나 지정용기에 배출</u></p>	<p>여수시 <u>폐기물 관리 조례</u>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u>법 제15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 관해야 한다.</u></p> <p>1. (현행과 같음) 가.----- 나.----- <u>다. &lt;삭 제&gt;</u></p> <p>2. (현행과 같음) 3. ----- ----- <u>일정한 장소에 배출</u> 4. ----- <u>환경부의 「재활 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분리·보관</u></p>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1.~ 2.(생략)

⑤ (생략)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매립용·소각용·재사용·공공용으로 구분하고, 매립용에는 불연성폐기물을 소각용·재사용에는 가연성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합성수지, 생분해성, 탄산칼슘 함유 봉투 중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주민의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의 색상은 가연성은 연두색, 불연성은 흰색, 재사용은 하늘색,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③ (생략)

제22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생략)

1.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제99

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재사용·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  
-----  
-----  
-----  
-----

---- 적합해야 하고,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연두색, 재사용은 하늘색,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

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종량제  
봉투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  
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② (생략)

③ (생략)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1. (생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중에서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받는 사  
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  
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때에  
는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  
서 지급하여야 한다.

한 훈령」 제99조제1항에 따른 금  
융기관으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사람으로  
서-----

② -----  
-----

1명당 -----  
-----.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2 봉



여수시 조례 제1603호

붙임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1부.

##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5. 보일러 노후시설 점검·정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예산 확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2



여수시 조례 제1604호

붙임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

무원을 부단장으로 둘 수 있다.

③ 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단원은 제5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특정 성별의 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3.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

4.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여수시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교부한다.

⑥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⑦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3조(임기 및 해촉)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축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원 스스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교육 및 훈련)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험도 평가 지원)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신속한 실시를 위해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단원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

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경비지급)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단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 ]등록 [ ]말소 신청서

※ [ ]는 해당하는 곳에만 √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소 속	직 위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E-mail)

신청사항	[ ] 등록 [ ] 말소		
	전문분야 ※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건축물 [ ] 철도 [ ] 가스 · 전력 · 통신	[ ] 교량 · 터널 [ ] 원자력시설 [ ] 기타( )	[ ] 댐 · 저수지 [ ] 항만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 ]등록 [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첨부 서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앞쪽)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사 진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합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인

(뒤쪽)

본 증을 분실하였거나 습득하신 분께서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061-659-49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증 규격) 가로 12cm × 세로 9cm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반려  
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 월 18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605호

붙임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호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등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해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둘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

· 분석 ·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